

5.1.12 건강증진센터운영규정

제정 2013. 08. 26.

개정 2020. 05. 29.

개정 2022. 04. 04.

개정 2023. 02. 02.

개정 2024. 04.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증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본 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의 주관부서는 학생복지처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센터장은 본교 보건학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4.04.>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증진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촉탁의사나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를 업무로 한다.

1. 재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2. 질병의 예방조치 및 보건교육
3. 건강 상담
4.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 건의
5. 보건통계 작성
6. 기타 학교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 2023.02.02.><개정 2024.04.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센터 운영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